

이 보도자료는 2019. 6. 10.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자료를 통해 공개되는 범죄 사실은 혐의일 뿐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공보담당관 차장검사 신호철
전화 031-909-4302, 4322

보도자료
2019. 6. 10.

자료문의: 형사제3부장실
전화: 031-909-4603, 4604
주책임자: 형사제3부장 양재혁

제 목

피해자 2,000여명에 이르는 P2P 대출업체의 오버펀딩 등 신종사기 대출비리 사건 수사결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P2P 대출업체 H펀딩 불법대출사건에 대해 수사한 결과,

- 투자금모집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대출광고액보다 평균 55%를 초과로 투자받아 그 차액을 빼돌리는 신종사기수법 '오버펀딩'으로 2,000여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수억원을 편취한 사실을 규명하고,
- 추가수사를 통해 대출상환금 12억원을 빼돌리고, 대출차주와 유착하여 대출사례금, 담보권 해지 사례금을 수수하는 등 운영자의 비리를 확인하여,

H펀딩 대표이사를 구속기소하고, H펀딩 이사 및 대출차주 2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I.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1. A(35세) : H펀딩 대표이사, P홀딩스 대표이사 **구속기소**

- 2017. 7.경부터 2018. 4.경까지 신종사기수법인 '오버펀딩' 으로 8억 6,000 만원을 편취하여 사기
- 2018. 5.부터 2018. 12.경까지 H펀딩 투자상환금 12억원 업무상횡령
- H펀딩 이사 B와 공모하여 2017. 12. 6억6,500만원 대출담보를 임의해지하고, 2018. 6. P홀딩스를 동업한 대출차주 D로부터 22억원 대출담보를 해지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해지해주고 2억5,700만원을 받아 특정법위반(배임), 배임수재

2. B(43세) : H펀딩 이사

- 2017. 3. 대출차주 D가 받은 대출금 중 리베이트로 돌려받은 1,000만원을 개인용으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
- 2017. 7. 대출차주 D와 공모하여 1억원만 대출함에도 3억원을 대출하는 것처럼 속여 그 차액 2억원을 편취하여 사기
- 2017. 12. H펀딩 대표이사 A와 공모하여 6억6,500만원의 대출담보를 임의해지하여 **특경법위반(배임)**

3. C(57세) : H펀딩 대출차주, P홀딩스 회장

- 2018. 6. P홀딩스를 동업한 H펀딩 대표이사 A에게 22억원의 대출담보를 해지해달라는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2억5,700만원 제공하여 **배임중재**

4. D(50세) : H펀딩 대출차주

- 2017. 7. H펀딩 이사 B와 공모하여 1억원만 대출함에도 3억원을 대출하는 것처럼 속여 그 차액 2억원을 편취하여 사기

II. 주요 수사경과

- 2018. 5. 일산동부경찰서에 H펀딩 투자자 123명 고소장 접수
 - 2018. 9. 일산동부경찰서, H펀딩 대표이사 등 운영진 5명의 사기, 횡령 등 사건 혐의없음 송치
- 2018. 8. 고양지청에 H펀딩 투자자 405명 고소장 접수, 검찰 직접 수사개시
 - 경찰 혐의없음 송치사건 검토결과 정밀계좌추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검찰고소사건과 병합하여 연결계좌추적 실시
 - H펀딩 운영자들과 대출차주들의 유착에 대한 수사
- 2019. 5. 30. H펀딩 대표이사 구속기소, H펀딩 이사 및 대출차주 2명 불구속기소

Ⅲ. 사건의 특징

□ 투자금관리시스템의 조작을 통해 투자자, 대출차주 몰래 자금편취

● H펀딩 대표이사 A는 프로그래머 출신으로 H펀딩 투자금관리시스템의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투자금모집 과정에 허위 출금명령을 입력하여 광고액보다 많은 금액을 투자받아 편취

- P2P펀딩 대출투자금은 ‘세이프트’라는 전자결제시스템에 의해 목표액만큼 모집이 완료 되는 순간 그 돈은 대출차주 외에는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나, 투자모집과정에 목표액을 상향 조정해두고 마치 투자자들이 투자취소를 한 것인 양 출금명령을 입력하여 모집액 중 일부를 빼낸 다음 다시 목표액을 광고액처럼 낮추어 출금사실을 숨김

● A는 위와 같이 돈을 빼돌리는 과정을 ‘세이브했다’고 표현하며 개인 채무 변제나 H펀딩의 운영자금으로 사용

※ 피해자들은 전국에 흩어진 소액투자자들인 관계로 채권자집회 등 서로의 투자금의 확인할 기회를 갖지 못해 실제 대출모집액이 광고액보다 많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H펀딩 이사 등 공범들도 전혀 알지 못함), 대출차주가 대출금 전액을 변제해도 실제로는 그보다 많은 돈을 투자받아 일부는 A가 몰래 사용하였으므로 투자자들에게는 전액변제를 할 수 없어 필연적으로 부실이 발생하는 구조였음

※ 통상의 P2P 대출사기는 허위 대출차주를 내세우거나 대출차주와 짜고 대출금을 빼돌리는 구조이어서 본건 투자금모집 프로그램 조작을 알지 못한 경찰에서는 대출차주를 전수조사하였음에도 실제 광고한 대로 대출금이 집행되었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 투자금모집 프로그램 조작사실을 밝혀 구속함



□ 특정 대출차주와 유착하여 투자자들의 돈으로 함께 사업

- H펀딩 대표이사 A는 대출차주 C와 투자회사 P홀딩스를 설립하여 다른 대출차주의 상환금 12억 원을 몰래 빼돌려 P홀딩스 운영자금 및 개인 채무 변제, 외제차 리스 등에 사용하고, C의 부탁을 받고 22억원의 대출 담보권을 해지해준 다음 그 사례로 수억원을 수수
- H펀딩 이사 B는 대출차주 D로부터 대출사례금을 받아 챙기고, 다른 대출차주에게 지급할 대출금 2억원을 빼돌려 D의 대출상환금 변제에 사용
 - 투자자들의 자금을 마치 자신들의 돈처럼 사용하고, 이를 미끼로 대출 차주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투자수익을 꾀함

IV. 참고 사항

- 피해자 2,000여명, 합계 피해액 50억원에 이르렀으나 암장될 뻔한 집단민원사안을 치밀하게 수사하여 전모를 밝혀 기소함
 - ※ 본 사건의 고소인은 528명이나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한 피해자는 2,000여명에 이르고, 오버펀딩 사기수법으로 피해자 자신이 사기당한 사실도 모르는 경우도 다수였으며 추가로 17건의 고소장(고소인 18명)이 접수됨
- 범행계좌에 대하여 지급동결조치 및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보전조치로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함
- P2P 대출업체 운영자가 투자금모집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투자금을 증도에 인출하지 못하도록 금융감독원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 